

인문한국(HK)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2.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문한국지원사업(이하 “HK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HK연구인력의 정의, 채용절차, 의무사항, 임용조건 및 처우 등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HK연구소(원)는 한국연구재단의 HK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소(원)을 말한다.
② HK연구인력이란 HK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HK연구소(원)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을 말하며,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1. 전임교원(이하 “HK교수”라 한다)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2. 비전임교원(이하 “HK연구교수”라 한다)의 직위는 학술연구교수(HK)로 한다.

제3조(위원회) ① HK연구소(원)는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HK연구소(원)는 소속 HK연구인력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소(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단, 연구소(원)운영위원회가 연구소(원)인사위원회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③ 연구소(원)운영위원회와 연구소(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해당 연구소(원)의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할 수 있으며, 연구소(원)의 규정 또는 내규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2장 HK교수

제4조(신규임용) ① HK교수의 신규임용 자격 및 신규임용 절차는 「전임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임용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HK교수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와 박사학위 소지자가 각각 전체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HK교수가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위 전공분야가 연구소(원)에 임용되어 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전임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임용규정 시행세칙」 및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HK교수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HK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각 연구소(원) 규정 또는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처우) ① HK교수는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을 제외한 보수, 연구실 제공, 시설이용, 후생복지 및 기타 처우에 대해 본교의 동일직급 타 전임교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② HK교수의 보수는 「교원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책정한다. 단, HK교수의 보수는 사업수행기간 동안 연구소(원)에서 매학년도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국고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③ HK사업 종료 이후 HK교수의 보수 지급은 교비로 한다.

제6조(승진임용, 재임용 및 조기정년보장) ① HK교수의 승진임용, 재임용 및 조기정년보장은 「전임교원임용규정」에 의거 시행되며, 필요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임용 및 재임용 : 「전임교원임용규정」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 실적의 2배. 단, 승진임용 시 국제 학술지를 포함할 경우 1.5배
2. 조기정년보장 : 「전임교원임용규정」의 [별표 7]에 명시된 실적의 2배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실적을 국제 학술지 논문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교수업적평가) HK교수의 업적평가는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8조(복무) ① HK교수는 소속 연구소(원)에 상근하면서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대외기관에 겸직하거나 출장할 수 없다.

② HK교수에게는 사업수행기간 중 책임강의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연구소(원)장 승인하에 연간 6시간까지 본교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기간 종료 후 HK교수의 복무사항은 「교원인사기본규정」 및 「전임교원 임용규정」을 따른다.

제3장 HK연구교수

제9조(자격) HK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주5일 전일제 근무 가능자
3.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4.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인 자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0조(신규임용) ① HK연구교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HK연구교수를 공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외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원마감일 기준 5일 이상 동안 채용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개채용 지원서류의 접수방법은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때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때 접수방법은 교무처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④ HK연구교수는 연구소(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연구소(원)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

⑤ HK연구교수는 특정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전체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HK연구교수가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위 전공분야가 연구소에 임용되어 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HK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각 연구소(원) 규정 또는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비서류)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임용권자는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이력서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연구실적목록

제12조(처우) ① HK연구교수의 보수는 「비전임교원 처우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HK지원사업에서 정한 기준으로 정하며, 사업수행기간 동안 HK연구교수의 연구성과를 평가하여 보수의 10%이내에서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HK연구교수에게는 책임강의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원)장 승인하에 학기별 주당 6시간 이내로 강의할 수 있으며 강의료는 외래강의료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 외에 별도로 지급한다.

제13조(재임용) ① HK연구교수의 실적평가는 재임용 예정 2개월 전 (6월말 또는 12월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재임용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재임용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
 2. 임용계약서에 별도의 재임용 기준이 없는 경우 소속 연구소(원)의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HK연구교수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HK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각 연구소(원) 규정 또는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임용기간) HK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해당 사업 수행기간 동안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① HK교수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전임교원에 관한 제규정을 적용한다.

② HK연구교수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및 「비전임교원처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 제2항 및 제10조(승진)은 본교 전임교원임용규정 개정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